정책자료

국가기술자격제도 전면 개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기술자격제도 개편 방침을 담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지난 3월9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내용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마치면 별도 자격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자격증을 받게 되며, 국가기술자격 등급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의 4단계로 단순화되고 자격시험 응시자격에서 학력제한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편집자 註]

자격등급 4단계로 단순화하고, 학력제한 폐지

■개편 기본방향

[1] 자격정책 정비

각종 자격체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정책의 틀을 수립하고 자격체제의 범위, 투명성, 호환성,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격제도를 개편한다.

자격취득을 학점인정제를 통해 교육과 연계, 운영하여 자격체계와 교육체제의 통합성을 제고한다.

[2]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국가표준으로서의 자격제도와 민간주도의 자격제도를 병행 운영하여 자격체제의 안정성과 산업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적응성을 확보한다.

[3] 전문 서비스분야 자격제도의 확충

정부기능 일부의 민간서비스화, 기업조직의 외부화(Externalization), 유통체제의 대형화·합리화에 따르는 고도산업사회의 서비스부문 발전을 뒷받침할 서비수분야 자격을 국가자격 뿐만 아니라 민간제도 활성화로 확충한다.

■개편내용

[1] 자격제도 관장주체의 다원화

자격제도를 국가독점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격제도 운영주체를 다원화한다.

①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 대다수와 관련있는 일반자격분야 및 민간이 수행하기 곤란한 자격분야를 관장(주로 고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 수준의 국가기술자격을 관장)한다.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업무와 관련된

■ 자격제도 개편방향

근거법령	자 격 기 본 법			직업교육촉진법	교육법
종류	국 가 자 격		민간자격	직업능력인증제	학위
관할주체	국가기술자격 노동부	기타국가자격 각 부처	각 부처	교육부(능력개발원)	교육부
자격제운영주체	국가기술자격 검사관리공단	각 부처 또는 수탁사업자	민간사업자(기업, 직종단체)	능력개발원 또는 그 수탁 사업자	학교
자격창설절차	법정절차	법정절차	신교재	직업능력개발원	학교설립절차
평가인정			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대학교육협의회 등
학점인정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원	

자격제도를 관장한다.

②민간은 각종 전문직단체, 직종별 협회, 기업체 등이 자격제도 관장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특수전문분야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자격의 질을 유지하며 관리한다.

③「직업능력개발원(가칭)」은 국가자격 이외의 자격제도에 대한 평가 인정업무를 관장한다. 특히 민간관리자격증 창설의 절차와 제도운영을 평가, 자격증의 공공성과 질을 평가한다.

[2] 국가기술자격제도 개편

①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국가자격제도 운영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국가기술자격검정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담당한다.

②절차적 규제방식으로 전환 : 국가기술자격 등 국가자격이 창설과 폐지를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제방식 도입,급변하는 기술의 변화와 새로운 산업사회 요구에 대한 자격제도의 현장성을 제고한다.

③자격의 단순화·통합화 : 지식·정보사회 도래로 기술과 기능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종별은 통합하고, 자격등급은 「기능사(고졸 수준)→산업기사(전문대 수준)→기사(대졸 수준)→기술사(대학원 수준)」으로 단순화하며 응시자격에 있어서의 학력제한은 폐지한다. 현행 기능장제도는 유지하되 기능사2급은 기능사로, 기능사1급과 기사2급은 산업기사로 전환한다.

■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1] 민간자격제의 자율적 운영 강화

직종단체 기업 등 산업체, 전문가 단체 등은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자격제도를 창설·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처에 신고하는 등 자격제 운영내용을 객관화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민간이 관장하는 자격검정은 「직업능력개발원」이 평가 인정하여 운영내용에 대한 공인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체 자격제도 또는 사내 자격제도 등 민간자격제를 활성화한다.

[2] 민간자격 검정 등 민간자격

①신전문직 자격 창설 : 보석감정사

②특수분야의 자격 검정 : 병아리감별사

③사내 자격제도의 검정 : 삼성 인사담당자의 인사관리자격증으로 예를들 수 있다.

[3] 기대효과

인력양성의 투명성 증가로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산업계 기술수요를 객관적 자격으로 표현함으로써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한다.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연계 강화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연계 배경

직업자격증이 동시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의 진학자격이 되도록 하여 학력과 자격을 일치시키는 것이 선진국 동향이다.

[2] 연계강화

자격검정기준을 직업교육 및 현장직무와 연계하고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제 적용을 통해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를 강화한다. 직업교육기관에 실무직업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닌 기술자격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한다.

[3] 연계강화와 실현 방안

기술자격검정기준의 내용에 현장직무 및 직업교육과정을 대폭 포함시켜 직업교육과정이 자격제도의 취득에 유리하도록 유도한다. 자격증과 관련된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함으로써 자격취득과 교육과정을 연계시킨다. 실무직업교육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자격취득과 직결되게 국가기술자격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현장적합성을 제고한다. 기능사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훈련원은 교육과정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 별도 시험없이 관련분야 기술자격증을 수여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전문대학 등에 입학하여 취득자격과 동일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자격취득시험 관련과

목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 자격관련 법령정비

직업교육개혁을 법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교육법의 전면 개정시 「교육기본법(신설)」에 직업교육, 자격제도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다.

산업교육진흥법을 「직업교육촉진법」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직업훈련 관련법령을 정비한다.

직업교육촉진법에 교육·훈련기관의 연계, 평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을「자격기본법(가칭)」으로 전면 개정하고, 민간자격제도 운영 사업자의 창설과 그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자격제도에 대한 평가인정 절차 등을 규정한다.

자격기본법은 정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이 특정 자격을 창설·운영할 경우 이를 법정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승인을 받거나(국가자격), 신고(민간자격)함으로써 하나의 자격이 창설되는 절차법 체제로 운영한다.

자격기본법은 자격인정을 위한 평가방법, 자격에 부가되는 효과, 자격의 유지 갱신을 위한 교육, 자격증제의 합리성·공정성 등의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건설업체 클레임제기에 소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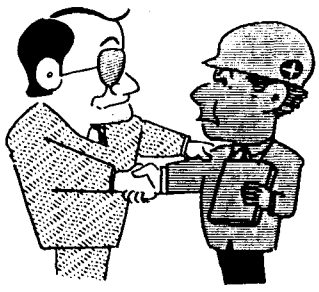

건설기술연구원이 최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용역회사, 발주기관 등 51개社를 대상으로 클레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공사계약이나 시공상 불리한 사항이 있어도 시공사들은 향후 공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클레임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주기관의 인식부족(25%)과 계약서류상의 책임한계규정 미흡(11%), 분쟁해결 미흡(7%) 등도 클레임제기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나 클레임제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클레임제기 주체는 발주기관이 50%인데 반해 원도급업체는 36%, 하도급업체는 14%에 불과해 시공자의 권인옹호를 위한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다.

클레임제기 사유로는 발주자의 추가지시(24%), 현장조건 상이(23%), 공사비 지불지연(17%), 공기지연(15%), 계약서 이해부족(13%) 등이었고, 해결은 대부분 사법기관(10%) 및 중재기관(5%)조정이나 기타방법(10%)보다는 상호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계약조건의 작성과 시방서의 명확화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전문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계에서는 설계도서 이해와 계약조건 검토 철저를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들고 있다.